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 요약서

1. 행정규칙명

「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」(관세청고시 제14-92호, '14.9.1)

2. 개정사유

□ **하역장소 용어 신설** 및 **하기장소의 물품반입 주체 명확화** 등 **물류환경 변화**를 반영한 입출항·하역 관련 **규정 정비**

□ **항공수입 위험물**에 대한 **신속한 하기장소 반입 규정 신설**을 통해 **위험물 안전관리 강화**(국민안전처 요구사항 반영)

□ **적하목록 취합 관련 규제완화, 4세대 서식 신설** 및 **세관 조직 개편**에 따른 **세관 관할구역 조정** 등 사항 반영

3. 주요 개정내용

□ 공항만 지역 내 하역장소와 하선(기)장소 구분 명확화를 위해 **하역장소 용어**를 **신설**하여 이해관계자 간 **업무 혼선 방지**(제2조)

* 과거에는 '하역장소'와 '하선(기)장소'가 대체로 일치하였으나, 최근 물동량 증가와 공항만 물류단지의 확대 등에 따라 하선(기) 장소가 확대되는 추세로 '하역장소'와 '하선(기)장소'가 불일치하는 사례 증가

□ 고시상 관련 규정은 있으나, **서식 없이 전자문서로만 운영**되는 **업무 관련 서식 신설**(제11조, 제16조및제24조)

* 적하목록 취하신청서, 하선장소 변경신청서

□ 보세화물 **실물관리** 차원에서 현행 하선(기)신고서상 신고항목인 **하역장소**와 **하선(기)장소**를 선사와 항공사가 **명확히 신고**할 수 있도록 **관련 조문에 내용 반영**(제15조및제28조)

□ **물류환경 변화***에 따라 **김포공항**과 **양산세관**의 **예외적인 하선(기)장소 운영 정상화**를 위해 관련규정 삭제(제28조및제53조)

* 원칙적인 하선(기)장소는 공항만 항역내 보세구역임

* 다만, 김포공항은 인천공항 개항 당시 장치장소 부족 등 사유로 인천공항의 예외적 하기장소로, 양산세관 관할 보세구역은 부산(신)항의 예외적 하선장소로 그동안 허용하였으나, 현재 장치장소 부족 등 문제 해소 상태

□ **하기장소의 물품반입 주체** 관련 이해관계자 간 적용상 혼선이 없도록 **명확화**(제30조)

* (사례) 인천공항 위험물창고 신규 운영인과 항공사·조업사 간 하기장소 물품반입 과정에서 반입 주체 관련 분쟁 발생

□ **항공수입 위험물**에 대한 **신속한 하기장소 반입 규정 신설**을 통해 **위험물 안전관리 강화**(제30조)

* 국민안전처는 인천공항 안전대진단 이행실태(시설물 등) 점검

☞ 그 결과, 우리청에 항공수입 위험물에 대한 신속한 반입 처리 요청

□ **적하목록 취합**을 **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게 위탁**할 수 있다는 **조문**은 **법적 근거가 없고, 민간영역**에 관한 사항이므로 **규제완화 차원**에서 **조문 삭제**(제50조)

□ **세관 조직개편**('16.1.18 시행)에 따라 입출항, 하선(기) 및 적재에 관한 업무 관련 **세관 관할구역 조정**(제53조)

4. 신·구 조문 대비표 : "붙임"

5. 규제대상 여부 : 신설·강화 규제 해당없음

6. 시행일 : 2016. 3. 14.